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1. 개정이유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정확한 품명 기재의무를 부과하고,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운송인에게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물방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탁송품 내 식물검역대상물품 확인 시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에 “지체 없이”라는 문구가 추가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도 해당 개정사항을 반영함.

나.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정확한 품명 기재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2)

-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통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물품포장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다. 식물검역 정보 안내·교육 요청 불응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2)

-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가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아목 위반행위란 아목 중 “알리지”를 “지체 없이 알리지”로 하고, 같은 호에 자의3목과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의3. 법 제12조제10항에 따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3항 제4호의3	10	20	40
처. 법 제45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3항 제6호	50	100	300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 사. (생략)				
아. 법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3항 제3호의3	10	30	90
자. ~ 자의2. (생략)				
<신설>				
차. ~ 저. (생략)				
<신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법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3항 제3호의3	10	30	90
자. ~ 자의2. (현행과 같음)				
자의3. 법 제12조제10항에 따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외부와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3항 제4호의3	10	20	40
차. ~ 저. (현행과 같음)				
처. 법 제45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3항 제6호	50	100	3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074